

사전 검토사항

해당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 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방침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사업 추진 유 형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사업 <input type="checkbox"/> 일회성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년)	
예산 확보 사 항	<input type="checkbox"/> 신규 확보 필요 <input type="checkbox"/> 확보 완료 (국 , 시 , 구) <input type="checkbox"/> 비예산 사업	예 산 팀 협 조 ()
이해관계인 유 무	○ 주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자 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울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업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필 요 성	○ 홍보대상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보도자료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보물심사 협 조 ()

2016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변동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II 사업추진 현황

복지수급자 현황

- 복지수급자 : 40,312가구 53,785명

(기준일: 2015.12월 말)

구분 (단위)	총계	기초수급	저소득 한부모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의료급여 (타법의료·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포함)	초중고 교육비
						장애인	자활	의료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40,312	4,856	1,152	20,537	1,617	814	38	1,148	540	7,175	2,435
명	53,782	7,054	2,814	25,814	1,646	856	38	1,535	948	9,792	3,285

추진실적

- 공적자료 변동정비 : 32,850건

(단위 : 건/ '15.12월 말 기준)

총계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판정	급여지급 자료정비
	소득재산 변동	인적변동 (사망, 말소,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출입국)	소득재산 변동	인적변동 (사망, 말소,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출입국)		
32,850	5,380	21,852	325	2,800	2,493	38,313

○ 보장 자격 중지 및 변경처리

[단위:가구/ '15.12월 말 기준]

총 계	기 초 수 급	저한 소부 특	기 초 연 금	장 애 연 금	차 장 애 수 위 당	차 상 위 본인부담	차 상 위 활
3,007	1,097	280	1,082	279	155	104	10

○ 정기 확인조사

[단위 : 건/ '15.12월 말 기준]

구 분	총 계	보장중지	급여 감소	보장 유지 및 급여증가	
계	5,927	785	761	4,381	
2015	상반기	1,963	332	527	1,104
	하반기	3,964	453	234	3,277

Ⅲ 추진 계획

-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 조사대상 : 40,312가구
- ☐ 조사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 준 중위소득	'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15년 및 '16년 비교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5년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 43%)	'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 40%)	'15년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 (중위 29%)	'15년*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 조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기타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주기적 확인조사 내용

기초수급자	조사 주기	부양의무자	조사 주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보 공적자료 변동사항	- 통보 시마다 조사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차감한 공제소득 자료(의료비 등)	- 연 1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과자 만성질환 등 6개월 이상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연 1회	부양 거부기피와 관련된 사실 관계의 변동 여부 (사통망 변동 자료 참고)	- 연 1회
조건부과제외 및 유예자, 조건불이행자, 근로능력이 있는 소득활동자	- 반기별 1회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 거부 기피하는 경우	- 확인조사 제외 - 특히, 금융재산 조사 제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일용소득 근로자	- 반기별 1회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 시 소득조사 실시		

📄 조사방법

- 복지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이행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변동조회 확인조사
- 상담·가구방문 등을 통한 공적자료 이외 확인조사

조치계획

- 자립지원 별도가구특례 등 특례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보호
- 서울형수급자, 희망온돌 등 지자체 자원 활용 구제
-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연계

조사일정

구 분		상반기						하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정기 확인조사													
월별 (단주기1) 확인조사													
근로무능력자 판정 확인													
조건부과-자활사업참여가구													
조건불이행,보장기관 확인소득자													
조건부과 제외자 (반기)	대학생												
	양육·간병 가구원(1인)												
	주3일 이상 근로(사업) 소득자												
	환경변화적응기간 (전역,출소,중퇴,수술등)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임산부												
전출입, 보장유형, 급여자료, 기타 변동사항 상시 정비													

1) 연2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수급자 변동이 큰 자료중심으로 매월 공적자료를 변경하여 변동대상에 대해 **단주기(월별) 확인조사를 2016년 1월부터 시행**

- 공적자료 :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주요연금급여(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 취득세
- 대상자 -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 :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소득(50%이상 증감자)
- 연금급여 변동자 - 취득세 납부자

IV

제안사항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맞춤형복지 시행 이후 단계별 선정 및 차상위 보장으로 보장 유예
 - 다층화된 선정기준으로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점진적 탈수급으로 유도 및 차상위 계층으로 탈피하여 보장 지원토록 지원 필요
- 단주기[월별]확인조사 시행으로 점진적 변화에 대응 필요
 - 소득 변동자료 확인 주기 단축으로 인한 반기별 확인조사보다 적극적인 소명 및 검토 대응 필요

확인조사 수행을 위한조사 협조체계 구축

담당부서	수행 역할	공통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장팀 :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중지 및 재책정 처리 ,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 □ 자활고용팀 : 조건부과 및 제외·유예 대상자 확인 처리 □ 장애인지원팀 :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보장중지처리 및 급여 환수 	민원 응대
어르신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복지팀 : 기초연금 보장중지 등 변동처리 □ 어르신 시설팀 : 시설 수급자 보장 변동 처리 □ 드림스타트팀 : 아동시설 수급자 보장 변동처리 	
보육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다문화팀 :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부정수급 환수 처리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변동 및 중지 안내, 필요서류 징구 등 대민접촉 업무 	

연간조사계획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2016. 1월 중

연간조사계획 통보 ----- 2016. 1월 중